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1

(2012. 9. 10)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8월 23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2년 8월 28일

나. 의안번호 : 12-69

4.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 자치구로 마을 공동체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되고, 이를 반영하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개요 >

동 조례안은 전문 제4장 제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기본원칙, 제2장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지원, 제3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등을 규정하였음.

< 주요내용 >

- (1) 조례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로 변경함.
- (2) 안 제6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함.
- (3)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를 구성함.
- (4)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방법, 자격과 위원의 임기, 해촉사유를 규정함.
- (5)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 등 관리방법과 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6) 안 제27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수탁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 위탁 계약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네트워크하여 공동체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기존 조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제명을 서울시의 제명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최초인 2009년에 제정한 우리 구의 조례명을 사용하고, 둘째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본계획의 수립,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운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근거 등 많은 부분이 신설되어야 함으로써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사전에 조례개정 관련 주민 대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